

## 【 11 】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6. .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지하수법의 개정(법률7569호, 2005. 5. 31공포, 2005. 12. 1시행)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 (안 제3조)
- 나. 공공목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등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 할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지하수의 적절한개발·이용을 위하여 지역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라.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 마.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납입절차를 정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
- 바. 지하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 (안 제20조, ~ 제26조)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③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④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등)**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기타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①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 ③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④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2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4. 지하수 또는 환경영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지하수특별회계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주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법 제30조의2의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4.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5. 기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 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 ③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 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 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과태료 처분

**제21조(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양주시 지하수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서명		
	주 소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문서번호 : (일자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p>「양주시 지하수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의견제출인] 주소 :</p> <p>(전화 : )</p> <p>성명 : ○ ○ ○ (서명 또는 인)</p> <p>양주시장 규하</p>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별지 제3호 서식]

구술 의견기록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장소) 년 월 일( )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진술요지		
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6.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 위반사실 조사·확인서

## 1. 행위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2. 위반사실 조사·확인사항

-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장 소 :
- 관계법규 :
- 위반내용 :

붙임 : 증빙서류(사진 등) 첨부

년        월        일

행위자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직)	성명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귀하께서는 양주시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목적부동산의 표시	② 소재지		③ 건물구조	
	④ 지 목		⑤ 면적	
⑥ 위반사항	⑦ 반대급부이행 완료일(계약 효력 발생일)			
	⑧ 등기신청일			
	⑨ 해태기간			
⑩ 과태료금액		⑪ 산출기초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양주시장

## [별지제6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지방세  
고지서  
재증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bar code

받는 사람

□□□-□□□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과세기관 홍보관

OO시군구  
OCR

남세고지서 겸 영수증(\_\_\_\_분)  
(납세자 보관용)

00시도  
00시군구

납	과세대상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세 번 호											

납세자 :  
주 소 :  
과세대상 :

주민등록번호 :

남기내	까지
남기후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부과내역(과표 )	비고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수납의뢰서 00시도  
(금융기관보관용) 00시군구

OO시군구  
OCR

영수증통지서(\_\_\_\_분) (시군구보관용)

00시도  
00시군구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 목	납세년월	과세 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세자 :

납기내	까지

세액합계

납기후	까지

세액합계

세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계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 :

주 소 :

위의 금액을 수납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주시장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 :

주 소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과 태 료 납 부 독 족 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15675-01311일  
'94. 7. 22 통제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8호 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양주시 지하수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인)				

15675-01511 민  
'94. 7. 22 통제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신 : (관할법원)		발신 : 양주시장 (인)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양주시 지하수 조례」 제25조제2항과 관련됩니다.</p> <p>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 태 료 처 분 예 대한이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⑦이의제기 일 자	
<p>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별지 제10호서식]

##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고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m<sup>2</sup>)

## 관계법령별첨서

### 1. 지하수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9호]

**제5조제2항(지하수의 조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地下水와 관련된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12조제5항(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郡守에게 이를 통지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1. 第8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제조 또는 貯藏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 나. 「폐기물관리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產廢水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3. 地下水의 水位低下·水質污染 또는 地盤沈下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②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17조 (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개정 2001.1.16>)** ②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5.31]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 한다.

[본조신설 2005.5.31]

**第4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등<개정 2001.1.16>)** ① 제39조 및 第40條의 规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 2.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18594호]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20조제6항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측적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제40조 제3항 (지하수관리위원회)**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③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411호]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9.5.14, 2002.1.4>

1. 출수장치 및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4]

####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3.6.18 환경부령 140호]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128호]

**第19條 (물이용부담금의 賦課·徵收)** ① 水道事業者는 住民支援事業 및 水質改善事業 등의 財源造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水域으로부터 取水된 原水를 직접 또는 淨水하여 供給받는 最終需要者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負擔金(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賦課·徵收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漢江水系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水域으로부터 取水하는 專用水道의 設置者는 자기가 取水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漢江水系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② 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水量, 供給量, 損失率등 물이용부담금의 算定 및 豫測에 필요한 資料를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漢江水系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이용부담금의 算定方法, 賦課·徵收 method 및 納入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者는 물이용부담금의 納付義務者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水道의 設置者가 물이용부담금을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漢江水系管理基金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道事業者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1.1.16>

⑦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물이용負擔金을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漢江水系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⑧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물이용負擔金의 強制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⑨물이용負擔金을 賦課·徵收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水道法 第6條의2, 第6條의3 및 第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준조례(안)

## ○○시(○○군·○○구)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치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지역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00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군·구)의회 의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 소속 공무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과장급)이 되고 서기는 .....(계장급)가 된다.

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

한다.

**제1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

**제15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0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가산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